

정책토론회  
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

본 자료는 2017년 8월 3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  
「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」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

## I. 개최 취지 5

---

## II.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 6

---

발표자: 「김규동」 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

## III.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10

---

발표자: 「조정석」 (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)

## IV. 토론내용 요약 12

---

「신열우」 (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) 12

「김한목」 (삼성생명보험 상무) 12

「천병호」 (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) 13

「류성경」 (동서대학교 교수) 14

「최영해」 (동아일보 논설위원) 14

「이창욱」 (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) 15



## I. 개최 취지

- 민영보험은 정부나 사회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의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공적 성격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
  -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보험 외에도 생명보험, 연금보험, 실손의료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보험은 확산되고 있어, 보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
- 그러나 일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보험가입 거절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
  - 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산출과 계약인수 심사가 필요하며, 이러한 언더라이팅 과정이 없다면 보험시장은 실패할 수도 있음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보험 원리에만 입각하여 계약인수 심사만 엄격히 적용하면 보험이 정말 필요한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음
    - 특히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반드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, 경찰관,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공무원들에 대한 보장은 사회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임
- 이에 소방공무원 및 고위험직종 종사자 전반에 대한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, 금융당국, 보험업계,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함

## II.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

발표자: 「김규동」 (보험연구원 연구위원)

-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①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②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③ 보험가입을 거절하기도 함
  - 보험료 차등은 보험료에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며,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적용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함
  - 이러한 조치로도 리스크 관리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,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게 됨
  - 손해를 관리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계약인수 심사가 필요한데, 심사 기준은 보험회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음
  
- 보험회사는 직업을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로 나누고 있으며,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(A), 중위험(B, C) 및 고위험(D, E)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
  - 3단계 위험도에 따라 상해담보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, 일부 고위험직업의 위험도가 고위험직종의 보험료에 비해 너무 높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음
    - 가입 거절 직업은 보험회사 및 보험종류별로 상이하며, 사망보험에 비해 실손의료보험이 가입 거절되는 직업 및 보험회사가 더 많은데, 이는 보험종류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
  - 보험회사는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보다는 실제 직무 수행 중 수반되는 위험도를 반영하여 인수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임
    - 택배원 및 배달원의 경우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택배원 및 배달원에 비해 이륜차를

운전하는 택배원 및 배달원을 가입 거절하는 보험회사가 더 많음

- 그러나 일부 직업의 경우 손해율이 낮게 집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가입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, 보험회사들의 직업별 위험도 분석을 위한 통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
- 영국, 독일, 미국,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보장금액 제한 및 가입 거절을 하기도 하는데, 보험료 및 계약인수 여부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

■ 보험 원리에 기반해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,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, 부정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

- 통계 집적의 한계로 인해 보험회사별로 직업별 위험도 평가가 어렵거나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직업별 손해를 통계를 모든 회사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
  - 직업별 손해를 통계를 모든 회사가 주기적으로 공유할 경우 직업별 위험도 분석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, 통계 부족으로 인해 인수 거절했던 직업에 대해 보험가입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임
- 그러나 위험도에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요율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, 계약 인수를 위해 직무 수행 중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 식으로 일부 담보를 제외하거나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할 경우, 요율 세분화에 따른 통계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
  - 이러한 방식의 보험인수 확대는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보임

■ 사회 구성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할 수도 있으나,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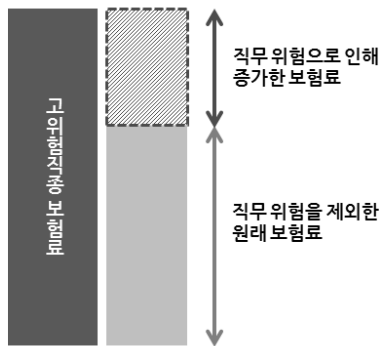
- 손해율이 높은 고위험직종의 계약 인수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, 보험료가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균 보험료로 계약을 인수(즉, 보험가입 거절 금지)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음
  - 그러나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

제기될 수 있음

■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 확대는 3층보장론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음

- 3층보장론은 국가가 국민생활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, 기업이 종업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기업 보장, 개인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개인 보장의 3단계 보장을 통해 보장이 완성된다는 이론임
- 개인보험은 정부나 기업(고용주)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여 3층보장론을 완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, 사회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(직업)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
- 이러한 경우에 1차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방향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  - 즉, 고위험직종 보험료는 직무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 부분이 있으므로, 이를 고용주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
- 따라서 직무 위험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기업이 단체보험 가입을 확대하거나 보험료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, 정부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직종 종사자 지원을 위해 정책성보험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

그림 II-1 직무 위험에 따른 고위험직종 보험료



- 정부는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, 이는 3층보장론 측면에서 개인보장을 완성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임



-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보험 도입을 검토하고,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, 군인,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

### Ⅲ.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

발표자: 「조정석」 (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)

-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업 위험(risk)을 고려하여 직업별로 차등화된 인수기준을 설정·운영하고 있음
  -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직무 특성상 보험사고 또는 보험사기 발생률이 높은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
    - 스텐트맨, 곡예사, 차력사, 카레이서, 채석원, 경정선수 등이 고위험직종의 대표적인 직업임
    - 직무에 따라 사고위험의 차이가 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사망보험, 질병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가입 제한 기준이 적용됨
  - 보험회사는 “고위험직종”을 인수할 경우 안정적인 위험 관리가 어렵고, 이는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계약자가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임
- 다만, 그 동안 보험회사의 인수 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실무 관행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음
  - 일부 보험회사는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“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”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,
  -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, 가입 희망자의 직업(소속)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, 그 동안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음
    - 이외에도, 일부 보험회사는 위험률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인수기준상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·운영하여, 많은 직업군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

■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, 각계 전문가,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

- 첫째, 보험회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
  -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하여야 함
    - \* 민병두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「보험업법」 개정안을 발의(17. 1월)한 바 있음
  - 또한, 비명시적으로 특정 직업군을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거절 직군 현황,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
    - \* 인수기준상 거절직군은 아니지만 인수심사 과정에서 전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
- 둘째, 보험회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항목을 신설하여 보험회사가 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,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
  - 현재 청약서는 주관식 항목(“취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오”)의 포괄고지 형태인 반면, 객관화된 항목(근무연수, 현장·내근직 여부, 취급장비 등)을 신설하여 고지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
- 셋째,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확대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, 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·관리 방법을 개선할 계획임
  - A보험회사의 경우, 위험률 통계 부족 등을 사유로 인수기준상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, 이들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음
  -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에 계약자의 직업별 사고통계를 신뢰성 있게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안정적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회사는 인수기준 설정 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- 넷째, 보험회사별 “위험직군 인수 현황”, “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”가 생명·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소비자에게 공시될 예정이다
  - 보험소비자는 공시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를 쉽게 파악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할 수 있음

## IV. 토론내용 요약

### 「신열우」 (소방청 소방정책국 국장)

- 최근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가입 거절 및 제한 사례에 대한 조사시행 결과, 총 292건의 사례를 취합함
  - 이 중 가입 거절과 가입 제한 사례는 각각 70건, 222건이었으며, 가입 제한 사례의 경우 보험료 인상 121건, 보험금액 축소 43건, 보장항목 제외 38건이 접수됨
- 보험가입 거절 및 제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면, ① 보험종류에 따른 거절 및 제한, ② 소방공무원 담당직무에 따른 거절 및 제한, ③ 임용 후 계약조건 변경 등이 있음
- 사례를 분석한 결과, 현행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성보험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  - 첫째, 직업 분류에 따른 일괄적 가입 거절 및 제한이 아닌 개개인의 위험률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 인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  - 둘째, 사회복지 및 공익 증진을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    -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, 퇴직 후에도 정책성보험이 유지되어 현직에서 노출되었던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
    - 한편, 정책성보험 가입 시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형태 중 효율적 예산 활용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
    - 특히,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정책성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해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

### 「김한목」 (삼성생명보험 상무)

-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성 상품에 대한 가입 거절 시 손해율, 도덕적 해이, 보험료 납입여력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음

- 가입한도는 손해율에 따라 직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, 실손보험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직종을 가입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나, 경찰, 소방공무원, 군인 등은 가입이 가능함
-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관련 불합리한 인수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함
  - 불합리한 거절기준 운영 제한 및 거절직군·위험직종 가입실적 제출 의무화, 합리적인 직무위험 평가유도, 위험직군 가입현황 공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  - 다만, 정부 차원에서 위험직종에 대한 경험통계 집적 관리 및 제공이 필요하며, 이를 통해 정확한 위험률 산출과 적정 보험료가 적용될 필요가 있음
- 초고위험직군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통한 실손보험 인수가 필요함
  - 다만, 현재 초고위험직군에 대한 경험통계가 부족하므로 보험개발원의 직업별 사고통계 집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

### 「천병호」 (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전무)

- 개인보험 가입 시 직업별, 직무별 위험도 차이에 따른 보험료 및 가입금액 차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
  - 단체보험은 일괄가입 방식으로 실질적 보험료 납부주체가 정부이고 보험회사들의 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져 표면적으로는 차등이 없는 것으로 보임
- 직업별·직무행위별로 위험도를 정확히 측정하고, 이를 보험요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  - 금융감독원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보험개발원에서 업계통계를 집적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시간이 다소 소요되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함
  - 단기적으로는,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 국내외 재보험자 요율을 참고한 뒤 추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

- 높은 보험료에 대한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### 「류성경」 (동서대학교 교수)

- 보험원리 측면에서 민영보험회사의 수지상등 및 적정 보험료 수준을 고려할 경우, 민영보험회사에게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 확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
  - 현재 국내 보험회사들은 경영의 지속성 유지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인수에 소극적,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
  - 향후 생·손보험회, 보험개발원, 보험연구원, 보험업계가 사회적 공익 측면에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
- 고위험직종에 대한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민영보험회사와 상호보완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함
  - 미국의 사례처럼 정부, 지자체 중심의 공제 또는 전문보험회사를 신설하여 리스크를 인수하고 그 리스크 일부를 민영보험회사의 공동풀 또는 재보험회사로 전가하는 방식을 제안함
  - 특히, 인보험뿐만 아니라 화재 및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물보험 분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이때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위험에 따른 충분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직무위험 평가나 직업별 사고율 통계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함

### 「최영해」 (동아일보 논설위원)

- 민영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,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해 보험계약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

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보험이나 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

- 미국의 사례와 같이 경찰, 공무원, 군인에 대한 보장을 정부 또는 전문보험회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
  - 소방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정부가 65~70%를 부담하는 방식이 적합함

### 「이창욱」 (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)

- 시장 원리의 한계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성보험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
  - 소방공무원의 업무 및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, 소방청, 기획재정부 및 보험회사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
  - 현재 정책성보험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- 고위험직종의 인수 거절 및 가입 제한 등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데이터 집적과 더불어 직무환경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합적 분석을 통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인수가 필요함
  - 보험회사와 요율집적기관 등을 통한 데이터 확보 노력이 요구됨
- 인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공시가 필요함
  - 공시는 상호 신뢰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으나, 다른 회사가 가입을 거절하니 우리 회사도 가입을 거절하자는 식의 폐단을 주의해야 하며,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





정책토론회

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

발행일 | 2017년 11월

발행인 | 한기정

발행처 | 보험연구원

주 소 |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(여의도동 35-4)

연락처 | 02-3775-9000

인쇄처 | 경성문화사 / 02-786-2999

Copyright@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. All Rights Reserved.

